

상주시 공고 제2022-958호

「상주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상주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7월 25일

상주시



「상주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상주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의 일부 조항의 개선과 「행정 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규제의 존속기한을 2027년 10월 31일까지 연장하여 시민들의 쾌적한 환경에 대한 지속적인 요구 및 기대에 부응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사육제한 가축의 범위 완화(안 제3조제1호)
- 나. 제한지역 중 ‘재축’ 조항 추가(안 제4조제2항 및 제4조2항제3호)
- 다. 규제 재검토기한 연장(안 제7조)
- 라. 환경개선과 악취저감을 위한 축사시설기준 개정(안 별표2)

- 공통시설 : 차폐수 식재 및 차폐막 설치 → 차폐수 식재 또는 차폐막 설치
- 개별설치시설 : 각 축종의 톱밥우사, 톱밥돈사, 육계·오리 계사의 바닥은 왕겨 및 톱밥계사 → 삭제

3. 개정조례(안): 붙임참조

4.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2년 8월 16일까지 상주시장(참조: 환경관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 나.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다. 의견제출 방법: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 1) 일반우편: (우742-706) 경상북도 상주시 상산로 223(남성동) 상주시청 환경관리과
 - 2) 전자우편: aaadd10043@korea.kr
 - 3) 팩 스: 054-537-6189

5.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상주시청 환경관리과(☎054-537-736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경상북도 상주시 홈페이지(www.sangju.go.kr → 행정정보 → 법령정보 → 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자치법규명: 상주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 개정안 내용	의견	비고